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56
----------	------

제출연월일 : 2025년 10월 2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정책자문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여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를 ‘기초학력보장지원자문위원회’로 명칭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7)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기초학력보장법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5. 8. 13. ~ 9. 3.)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4)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별첨 6)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학력보장지원자문위원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 ~ 5. (생 략) <u>6.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u> 7. 삭 제 8. ~ 24. (생 략) ② (생 략)</p>	<p>제2조(설치)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 <u>6. 기초학력보장지원자문위원회</u> ----- 8. ~ 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 용어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주무관 이현정(02-2282-8599)

【별첨 3】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별지 제5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p>의견 없음 (○)하 생략)</p>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9조제2항 관련)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 담당	감사관	장학사	류호찬
입안주관부서	정책기획관	통보일	2025. 8. 18.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조치사항
안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서울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동 개정(안)은 「기초학력보장법」 제6조를 반영하여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를 기초학력보장지원자문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관련 법규를 반영해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안동의”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5A서울교육020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기획관		
	담당자명	이현정	전화번호	02-2282-8599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명	여인진	전화번호	02-399-9546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5년 08월 12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5년 08월 18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8월 18일

【별첨 6】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이현정 (02-2282-8599)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목소희, 박지만, 임종수, 정명화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2조제1항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관점에서 개선할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 차별적이며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듯한 "학습부진대책"보다는 인권 친화적이며 교육감의 책무성을 담을 수 있는 "기초학력보장"으로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원안 동의	

【별첨 7】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1.13.] [법률 제18661호, 2021.12.28., 타법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기초학력보장법」

[시행 2022.3.25.] [법률 제18458호, 2021.9.24., 제정]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 ①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시행 2025. 1. 9.] [서울특별시조례 제9422호, 2025. 1.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경계선지능 학생” 이란 「초 · 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자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6호의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과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부칙 <제9422호, 2025. 1. 9.>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